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1.

발 의 자 : 서일준 · 김희정 · 주진우
이헌승 · 한지아 · 박상웅
고동진 · 김종양 · 김기현
윤영석 · 박성민 · 정점식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,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,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.

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,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·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,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).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”을 “국내외 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

8. 국내외 기술혁신주체의 국제기술협력 활동 지원

제2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국외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, 정보 및 인력 교류 등의 지원

제38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“기술혁신주체”란 산업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<u>기업 · 대학</u> 및 <u>연구기관</u> 등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<u>국내외 기</u> <u>업 · 대학 및 연구기관</u> ----- -----.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 · 기업 · 대학 · 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· 기업 · 대학 ·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	제27조(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<u>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</u> <u>국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</u>
<u><신 설></u>	8. <u>국내외 기술혁신주체의 국제</u> <u>기술협력 활동 지원</u>
7. · 8. (생 략)	9. · 10. (현행 제7호 및 제8호

② (생략) 제29조(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) ① (생략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~ 4. (생략) 제38조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④ ~ ⑦ (생략)	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29조(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국외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, 정보 및 인력 교류 등의 지원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38조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</u> <u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-